

예산총칙

제1조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	계	7,009,427,226	210,282,817
일	반 회 계	5,670,155,328	170,104,660
특	별 회 계	1,339,271,898	40,178,157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284,415,323	8,532,460
①	상 수 도 사 업	131,890,443	3,956,713
②	하 수 도 사 업	152,524,880	4,575,746
	기 타 특 별 회 계	1,054,856,575	31,645,697
①	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	398,378,881	11,951,366
②	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	6,229,013	186,870
③	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	304,727	9,142
④	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4,871,850	146,156
⑤	택 지 개 발 사 업 특 별 회 계	94,967	2,849
⑥	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	36,527,924	1,095,838
⑦	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	8,746,111	262,383
⑧	학 교 용 지 부 담 기 금 특 별 회 계	16,271,170	488,135
⑨	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190,740	5,722
⑩	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특 별 회 계	55,656,854	1,669,706
⑪	도 시 철 도 사 업 특 별 회 계	343,800,331	10,314,010
⑫	소 방 특 별 회 계	183,784,007	5,513,52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조서”와 같다.

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,445,491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1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 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